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. 8. 31 선고 2020가단100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8. 10.

판 결 선 고 2021. 8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답 398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부분 1653㎡에 관하여 2021. 2. 23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선역

별지